



의령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보

제879호 2024. 1. 3.(수)

선 람	기관의 장

고시

- 의령군 고시 제2024-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
- 의령군 고시 제2024-5호 도로명주소 고시 8

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. 1. 3.

의령군수

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

지구명	위 치	지정내용			지정사유	관리기관	비고
		유형	등급	현황			
만천3지구	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29번지 일원	인공	C	L=191.7m H=38.1m (A=9,723㎡)	비탈면 붕괴로부터 인명·재산보호	의령군청	
만천N1지구	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65 일원	인공	C	L=200.0m H=17.0m (A=3,284㎡)	비탈면 붕괴로부터 인명·재산보호	의령군청	

2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- 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- 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- 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- 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- 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야함

3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: 2024. 1. 3.

4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

지구명	사업시기	사업예산	사업내용	비고
만천3지구	2025년 이후	4,560백만원	급경사지 정비 A=9,723m ² (영구앵커보강, 피암터널 등)	
만천N1지구	2025년 이후	1,067백만원	급경사지 정비 A=3,284m ² (수목제거, 낙석방지망 등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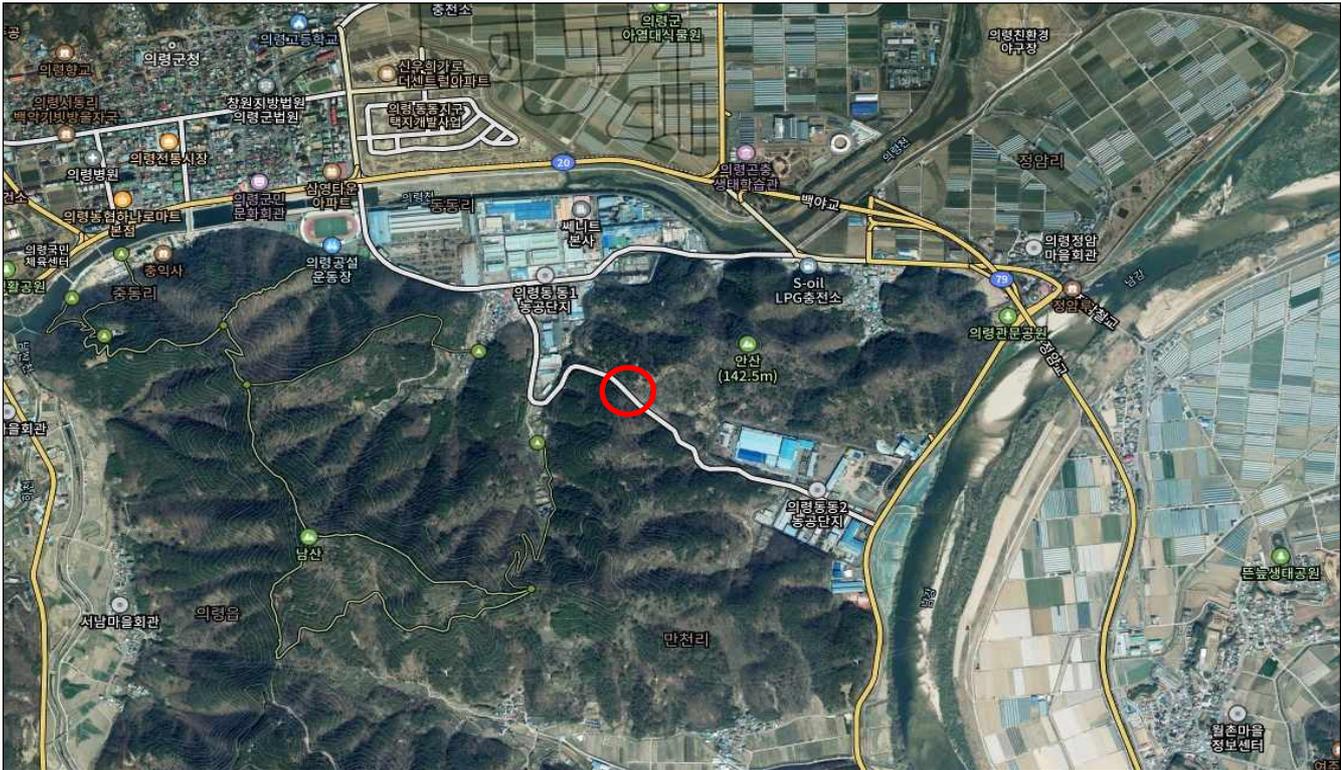
※ 사업기간 및 사업비, 사업내용은 예산(국·도비) 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5. 문 의 처: 경남 의령군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(☎055-570-3412)

- 붙임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
2. 지형도면 1부. 끝.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(만천3지구)

[붙임1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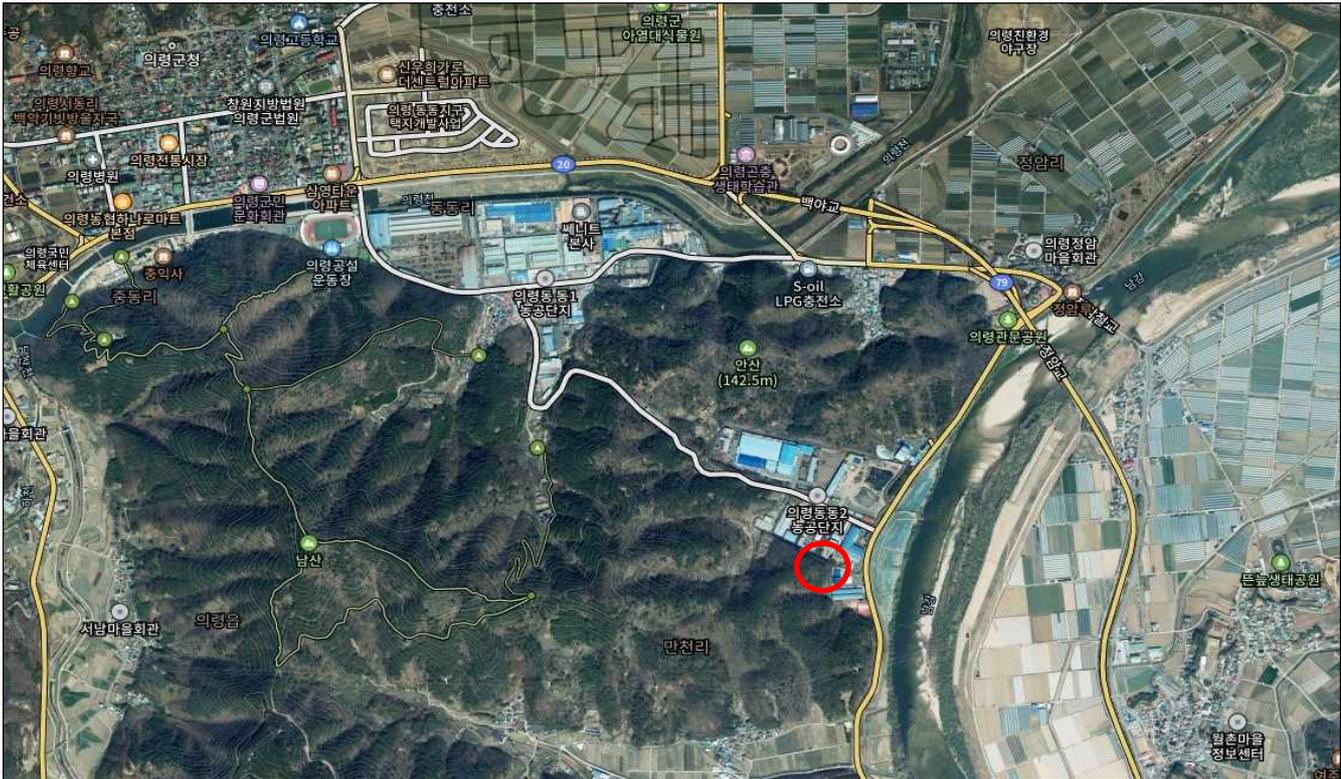
위 치 도: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29번지 일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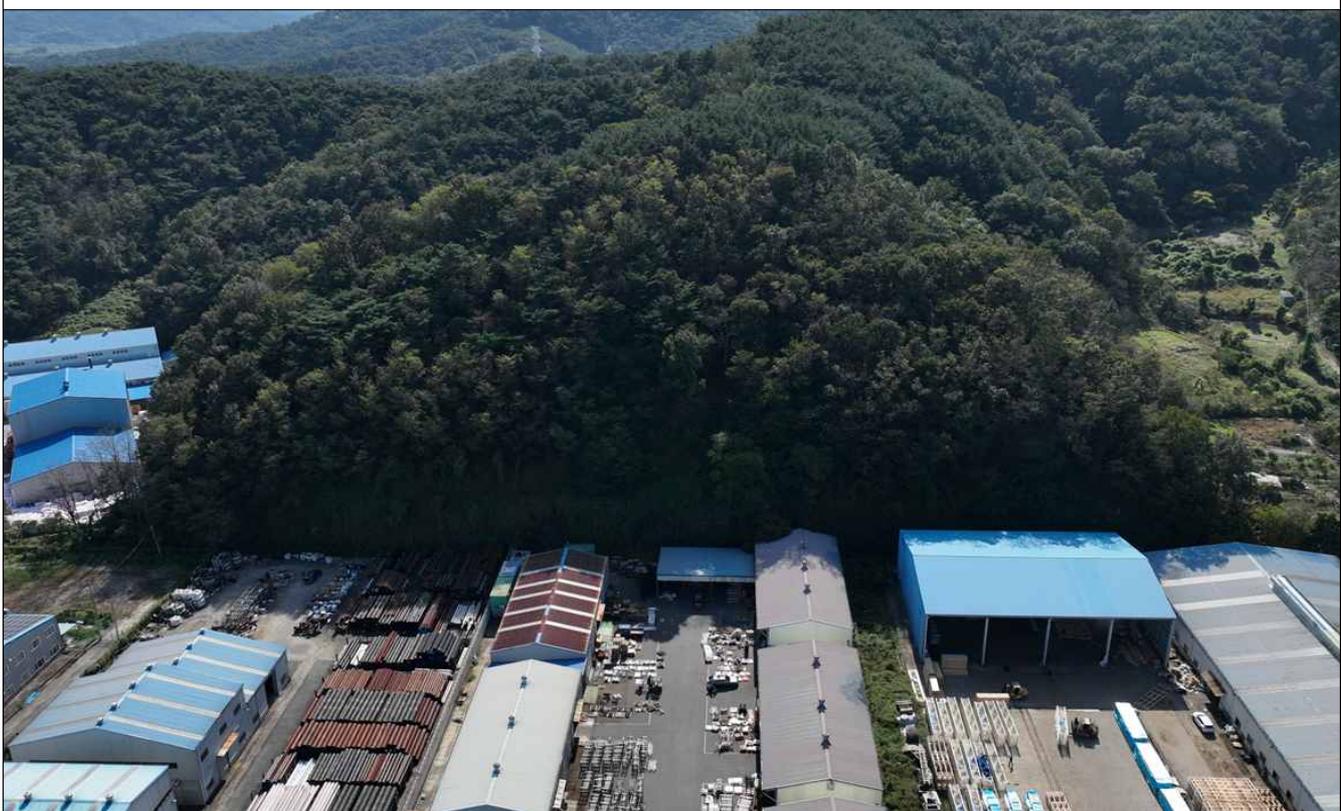
현장사진: 붕괴위험지역 전경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(만천N1지구)

[붙임1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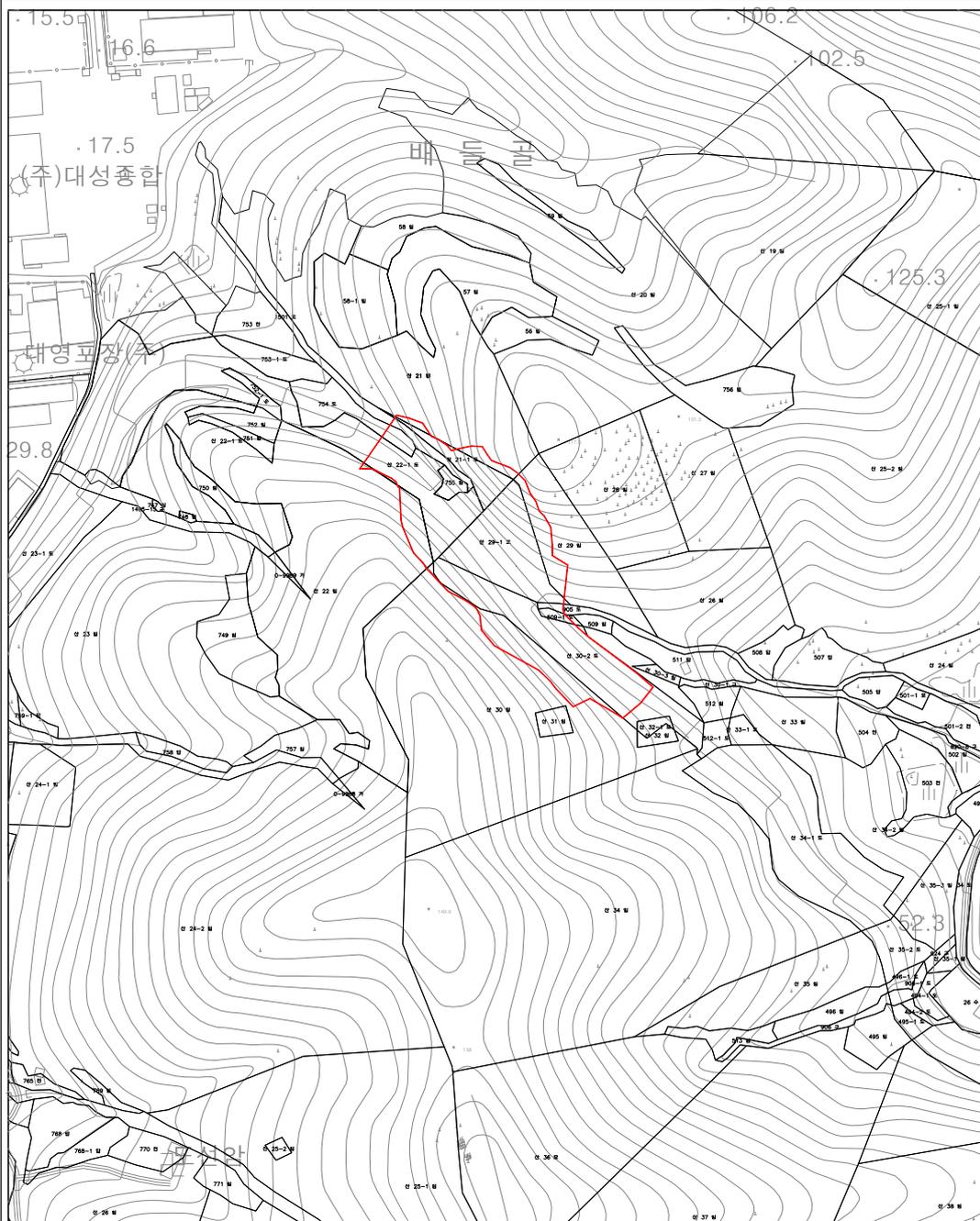
위 치 도: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65번지 일원



현장사진: 붕괴위험지역 전경

□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(만천3지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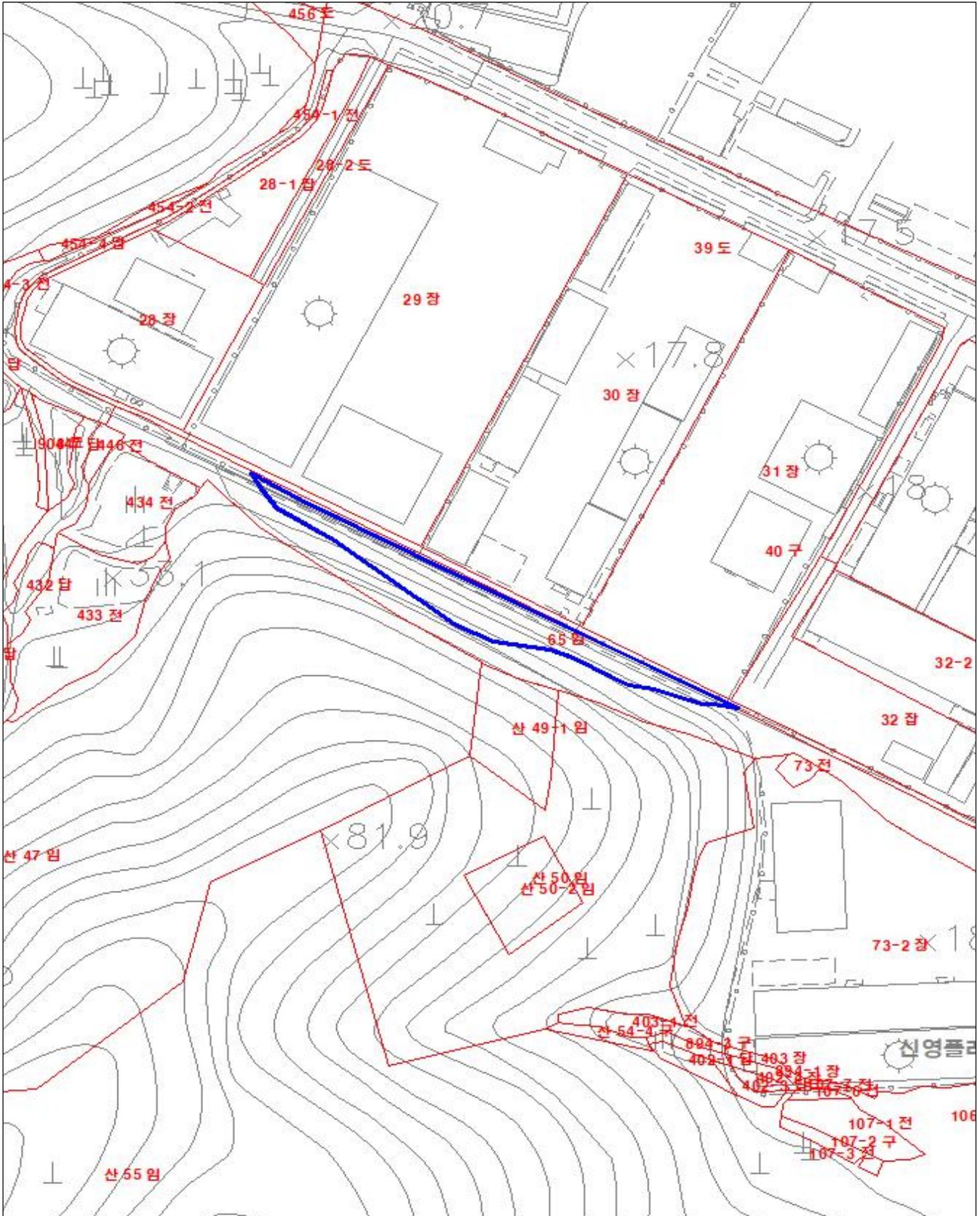
[붙임2]



위 치: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29번지 일원

□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(만천N1지구)

[붙임2]



위 치: 경남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65번지 일원

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 - 5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, 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3일

의령군수

- 도로명주소 부여: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고루로 3 등 3
- 도로명주소 폐지: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 665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
별 지 참조			
폐지 도로명주소		폐지일자	폐지사유
별 지 참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(☎055-570-2440)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1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78-3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고루로 3	2024-01-03	국어학자 이극로 선생의 호를 이용하여 고루로로 명명
2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1123-1	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고루로 285	2024-01-03	국어학자 이극로 선생의 호를 이용하여 고루로로 명명
3	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222-3	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 665	2024-01-03	행정구역명(어전+모의) 활용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내역

NO	폐지 도로명주소	고 시 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1	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 665	24-01-02	건물 철거 후 신축